

 안전행정부	보 도 자 료	작성과	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	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
	2013년 11월 13일(수) 조간 (11.12. 14:00 이후)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	담당자	과 장 심영택 사무관 홍성완	과 장 고광효 사무관 최시영
		연락처	02-2100-3938 02-2100-3950	044-215-4210 044-215-4213

종합부동산세,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 - 정부, 지자체의 자주 과세권 확대 -

-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로 했다.
 -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징수되나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방에 교부되고 있어 사실상 지방의 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.
 - 현행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이 확대되고 그 만큼의 자주재원이 확충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.
- 정부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납세의무자 세부담과 지방자치단체 세입에는 변화가 없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.
 -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명칭, 과세요건*, 납부기간**, 선택적 신고납부제도*** 등 모든 것이 현재와 동일하며

* 과세대상, 납세의무자, 과세표준 및 세율 등

** 매년 12. 1. ~ 12. 15.

*** 부과지가 원칙이나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스스로 과세표준·세액 등을 계산하여 신고납부 가능

○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그 동안 부동산교부세로 교부받던 재원만큼 종합부동산세를 안분납부* 받게 되어 현재와 세수변동이 없게 된다.

* 현행 부동산교부세의 배분기준과 동일하게 시·군·구의 재정여건(50%), 사회복지(25%), 지역교육(20%), 부동산보유세 규모(5%)에 따라 배분

□ 정부는 이번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과세권을 행사해 자주재원을 확충*하는데 도움이 되고

* '13년도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51.1% → 52.0%(↑0.9%)

○ 지방자치단체(재산세)와 국가(종합부동산세)가 유사 업무를 이중으로 수행하는 등의 행정낭비 요인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.

□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세 3법(지방세기본법, 지방세법, 지방세특례제한법)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

○ 2014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·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참고1

종합부동산세 과세제도 개요

과세대상	주 택	토 지																							
		종합합산토지	별도합산토지																						
납세의무자	인별합산 6억원 초과자 * 1주택자는 9억원	인별합산 5억원 초과자	인별합산 80억원 초과자																						
과세표준 및 세율	<table border="1"> <tr><td>6억이하</td><td>0.5%</td></tr> <tr><td>12억이하</td><td>0.75%</td></tr> <tr><td>50억이하</td><td>1.0%</td></tr> <tr><td>94억이하</td><td>1.5%</td></tr> <tr><td>94억초과</td><td>2.0%</td></tr> </table>	6억이하	0.5%	12억이하	0.75%	50억이하	1.0%	94억이하	1.5%	94억초과	2.0%	<table border="1"> <tr><td>15억이하</td><td>0.75%</td></tr> <tr><td>45억이하</td><td>1.5%</td></tr> <tr><td>45억초과</td><td>2.0%</td></tr> </table>	15억이하	0.75%	45억이하	1.5%	45억초과	2.0%	<table border="1"> <tr><td>200억이하</td><td>0.5%</td></tr> <tr><td>400억이하</td><td>0.6%</td></tr> <tr><td>400억초과</td><td>0.7%</td></tr> </table>	200억이하	0.5%	400억이하	0.6%	400억초과	0.7%
6억이하	0.5%																								
12억이하	0.75%																								
50억이하	1.0%																								
94억이하	1.5%																								
94억초과	2.0%																								
15억이하	0.75%																								
45억이하	1.5%																								
45억초과	2.0%																								
200억이하	0.5%																								
400억이하	0.6%																								
400억초과	0.7%																								
세부담 상한	전년대비 150%	전년대비 150%	전년대비 150%																						
과세기준일	매년 6.1일 소유자 기준																								
과세방법	부과·징수(매년 12.1~12.15), 신고·납부가능 ※ 재산세 : 부과·징수(주택 : 7.16~7.31, 9.16~9.30, 토지 : 9.16~9.30)																								
과세제외	임대주택, 미분양 주택, 가정어린이집, 기숙사 등																								
세수사용	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교부																								

참고2

지방세 3법 등 개정대상 법령 편제

□ 지방세 3법 체계에 맞게 편제·개정

○ 국세 관련 법령* 등은 지방세 3법 개정안 부칙으로 폐지·개정

*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, 국세기본법, 종합부동산세법, 조세특례제한법 등

현 행	주요 내용	개 정
국세기본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세목 명칭 및 귀속 (종합부동산세, 보통세, 시군세) ○ 납세의무 성립·확정시기 ○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	지방세기본법 (5조문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가산세 ○ 물납재산의 환급 	지방세법 (1장 4절 22조문) ※ 현행 5장 24조문
국세징수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납세고지서 서식 등 	
종합부동산세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세대상, 납세의무자, 과세표준 및 세율 등 	
지방교부세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부동산교부세 배분 기준 및 방법 등 	
조세특례제한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방이전법인에 대한 감면 ○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특례 등 	

참고3

지방세 전환 전후 업무처리절차 비교



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관련 질의 응답

1.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요건 및 배분기준을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할 경우 지방세로 전환해야 하는 실익은 무엇인가?

- 현재 종합부동산세의 징수액 전액은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고 있으므로, 이를 지방세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과세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지방의 과세자주권과 자주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임
-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국가에서 징수하여 이를 다시 지방으로 배분함에 따라 지방에서는 국가의 재원을 받아 쓰고 있으나,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과세하여 자체세입으로 충당하도록 개선하고
- 부과·징수율 제고 등 과세기반 정비로 과세형평성을 확립하며, 지방(재산세)과 국가(종합부동산세)가 유사 업무를 이중적으로 수행하는 등의 행정낭비 요인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

2.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과세요건의 변동이 있는지 ?

○ 현행 종합부동산세와 동일하여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변화는 없음

- 1세대 1주택자 3억원 추가 공제, 장기보유자·고령자 세액공제 등 혜택도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됨

구 분	주요 내용	현 행
과세대상	◦ 주택, 토지(종합, 별도합산)	좌동
납세의무자	◦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- 주택 : 6억원 초과자 - 토지 : 종합 5억원, 별도 80억원 초과자	좌동
과세표준	◦ 공시가격 전국 합산액에서 일정액*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(80%)를 곱한 금액 * 주택공제 : 6억원(1세대1주택 9억원) 토지공제 : 종합 5억원, 별도 80억원	좌동
세율	◦ 주택 : 0.5 ~ 2%(5단계 누진세율) ◦ 토지(종합) : 0.75 ~ 2%(3단계 누진세율) ◦ 토지(별도) : 0.5 ~ 0.7%(3단계 누진세율)	좌동
세부담 상한액	◦ 직전년도 총세액 상당액의 150%	좌동

3. 종합부동산세의 부과·징수 방법은 ?

- 현행 종합부동산세와 비교하여 큰 변화는 없음
 - 다만, 부과징수권자는 주소지 등 관할 세무서에서 시군구로 변경됨
- 특별징수의무자인 납세의무자의 주소지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국의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일괄 부과·징수

구 분	주요 내용	현 행
과세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(원칙)부과·징수 - (예외) 선택적 신고납부 	좌 동
부과·징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특별징수의무자 (주소지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장) 	주소지 등 관할 세무서장
납부기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12.1일부터 12월 15일까지 	좌 동